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8
------------	-----

2019. 6. 1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24.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 5. 30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 6. 19.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 1. 제안이유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광장의 부속시설물인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는 각각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함(안 제 3조).

나.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마곡일반산업단지

의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사용 목적과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마.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순서로 허가하고,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함(안 제6조제2항).

바.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안 제7조).

사. 불허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안 제8조).

아. 시장은 사용허가 이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사용자가 신청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0조).

차.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고, 사용일이 지난 후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안 제11조)

카. 혁신기술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마곡산업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가, 자전거보관소의 부속시설이 있는 마곡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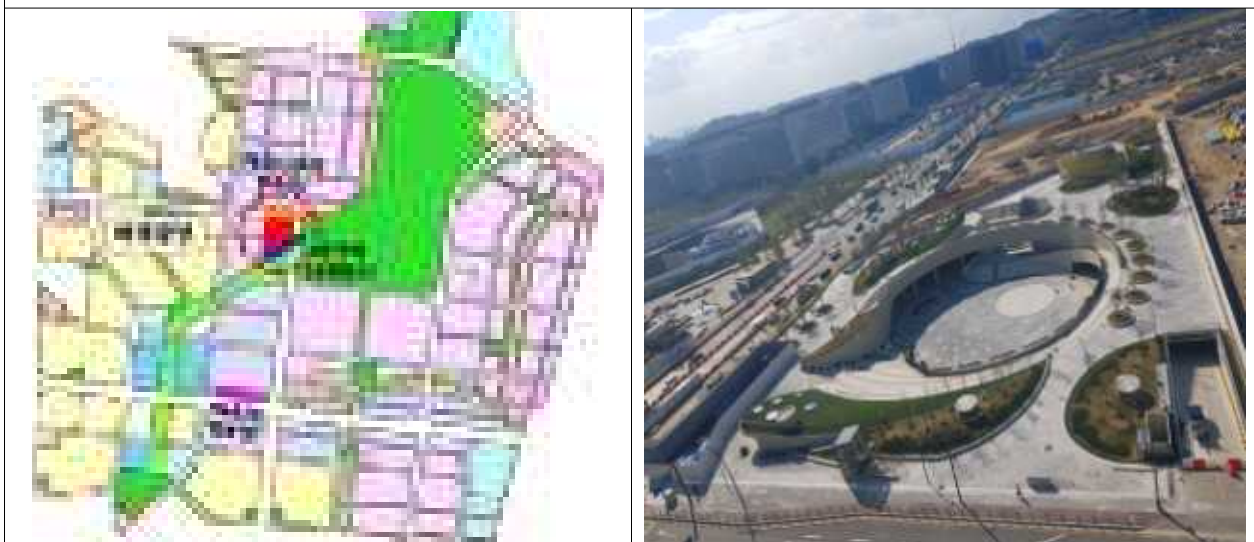
- 마곡광장은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하여, 지하철과 지하보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해당 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하여 규모는 12,979㎡<sup>2</sup>으로서, 지하·지상을 통합하는 썬큰형 광장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

#### ※ 마곡광장 개요

- 위치 :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
- 면적 : 12,979㎡(광장 및 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 '12.10)

구 분	지상1층	지하1층	지하2층
연 면 적	1,110.83㎡	10,317.43㎡	10,957.39㎡
주요시설	- 광장 - 자전거보관소(200대)	- 상가 14개(2,400㎡) - 지하공공보도, 연결보도 - 썬큰 광장	- 주차장(200대) - 기계·전기시설 - 지하공공보도
관리방식	- 광장 : 시설관리 용역	- 상가 : 통합운영사업자	- 주차장관리 : 시설관리용역

- 사업비 : 461억 원(공사비 450억원, 설계비 11억원)



조례안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안 제3~4조), 사용신청·허가·제한 및 통지(안 제 5~7조),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정지(안 제8~9조),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안 제11~12조) 등임.

## □ 주요사안별 검토의견

### 가. 광장의 관리 및 위탁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 마곡광장의 관리범위는 광장과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임. 부속시설물인 상가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는 해당 조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되, 마곡광장 전체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법<sup>1)</sup> 및 조례<sup>2)</sup>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현재는 SH공사<sup>3)</sup>)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산업단지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업무를의 위탁)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위수탁 기간 : 2018.5.1.~202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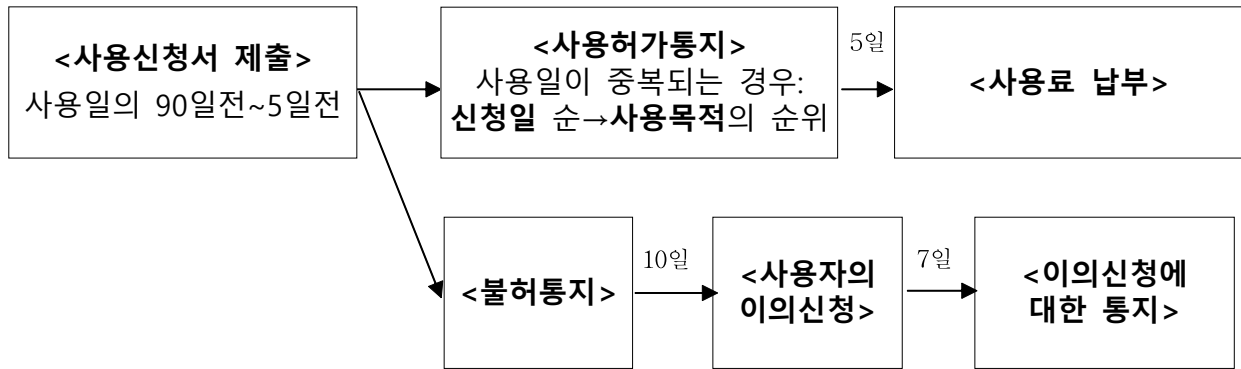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 위탁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
- 관리범위 : 마곡광장과 부속된 시설물(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 ※ 해당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관리 : 상가(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사용허가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및 사용료 징수(안 제11조)**

- 광장 사용신청은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신청일이 동일하고 우선순위끼리 경합할 경우, 마곡산업단지와 관련된 행사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순위 중복시에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음.

<광장사용 신청 절차>(안 제5조~제8조)



※ **동일한 사용일에 중복되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 신청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순으로 우선 허가 가능

  - ①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 ②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③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④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⑤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 이는 마곡산업단지내 광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입주기업 등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등을 위해 제정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 따르려는 것으로 파악됨.
-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표의 범위( $m^2$ /시간, 10~20원)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 광장사용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겠음.

#### 다. 혁신기술 지원(안 제13조)

-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시 필요한 지원(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장소로 주차장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라. 종합

- 이 조례안은 서울식물원 개장('18.10.11 임시개장, '19.5.1 정식개장) 및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시민과 입주기업의 마곡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곡광장의 사용신청 절차, 허가 및 제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이 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제출하도록 한 광화문광장이나 청계천 광장과는 달리 신청기간이 가장 긴 서울광장과 동일한 사용일인 90일 전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sup>4)</sup>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기술 관련 광장사용 시 부속시설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 다른 광장 조례와 차이가 있음.

---

4) 이는 신청가능 시점을 충분히 두어 계획적인 장소 확보와 행사를 위해 시간제한으로 야기되는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례규칙 규제심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곡광장”이란 마곡산업단지 내의 강서구 마곡동 368-3번지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해당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2.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곡산업단지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3. “사용”이란 마곡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부속시설물을 제외한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광장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



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상가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 보관소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용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곡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하 “사용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은 동일한 사용일에 중복되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하 “신청일”이라 한다)에 따라 우선 허가하고,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여부의 통지)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불허통지에 대해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변경)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서 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혁신기술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사 용 료	m <sup>2</sup> /시간	10월~20월	
기 타	<p>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p> <p>3. 야간사용료(18:00~ 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p> <p>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p> <p>※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p>		

[별지 서식]

마곡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최자 또는 주최 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FAX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m^2$	
행 사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장 귀하</p>				
<p>☞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p>				